내용 증명

제목 : 층간소음 보복 및 거짓신고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수신 : 김선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1길 37, 72동 3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발신 : 이귀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1길 37, 72동 4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 발신인은 2001년 4월 9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61길 37, 72동 403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귀하는 같은 건물 303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발신인은 귀하가 2021년 상기 건물에 거주한 이래로 공동주택에서의 거주 미덕을 지키고자 발신인의 거주 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주말에 8시까지 이동자제, 슬리퍼 착용, 변기 물소리가 크다고 하여 변기 교체 등)
3. 그러나 발신인 주거지에서는 퍼터연습기, 퍼터(이하 ‘퍼터 등’)가 없어 퍼터 연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2022.11.19. 압구정 파출소에 “발신인이 집에서 퍼터 연습을 하는거한다”는 내용으로 발신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2022.11.19. 압구정 파출소 소속 경찰은 오전 7시 30분경 갑자기 발신인의 주거 공간을 방문하여, 퍼터연습기, 퍼터가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동 경찰은 귀하에게 “403호에는 퍼터 등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발신인이 집에서 퍼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11.21, 2022.11.22, 2022.11.23일 “발신인이 집에서 퍼터 연습을 한다”는 거짓 내용 등으로 압구정 파출소에 발신인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즉, 귀하는 발신인이 주거지에서 퍼터 연습을 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발신인을 신고를 한 바 있으며, 이는 거짓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1. 발신인은 2022.11.23. 7시~8시 사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귀하는 발신인의 집에서 “드르릉 하는 소리가 났다”며, 압구정 파출소에 발신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귀하의 신고를 받은 압구정 파출소 경찰은 2022.11.23. 7시 39분경 발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1. 또한, 귀하는 귀하가 발신인에게 인정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천장을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치며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발신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바 있으며,

귀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9월경 발신인 소유 거주지의 배관이 충격 및 손상이 가해져(재물손괴), 귀하의 거주지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2022년 초 발신인에게 배관 수리 및 귀하 거주지의 천장 도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발신인은 2002년 1~2분기에 약 11.7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발신인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1. 2021년부터 80세를 가까이 바라보는 발신인과 발신인의 가족들에게 고성을 치며 훈계식으로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발신인에게 “행동패턴을 점검해봐라”, 발신인의 딸에게는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2. 결국, 발신인은 경찰의 갑작스런 주거지 방문 및 귀하의 보복 소음 등으로 수면장애 및 불면증, 심신불안, 우울의 고통 및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3. 한편, 귀하는 2020~2021년경 1102호에 거주하다가 1202호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1202호 거주자들을 괴롭히다가, 현재의 거주지인 303호로 이사왔으며, 그 후로는 403호 거주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귀하는 한양아파트 72동 1202호 및 403호 거주자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며 “주거적 안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발신인은 귀하에게 거짓 신고 및 보복 소음 발생행위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귀하께서는 이를 양지하시어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만일 발신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의방문 및 보복 소음이 계속된다면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귀하에게 거짓신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면장애, 심신불안, 우울증 등의 진료 및 진료비 상당액과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